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59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2024년 9월 6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됨.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인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제조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33조의 3).

Ⅲ. 검토의견

1.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33조의3(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재</u> <u>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u> <u>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u> <u>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용기의</u> <u>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u> <u>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그 제품</u> <u>·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생원료</u> <u>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u> <u>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u> <u>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u> <u>의 구매촉진) (생 략)</u>	<u>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u> <u>의 구매촉진) (현행 제33조의3과 같</u> <u>음)</u>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3조¹⁾, 동법 시행령 제33조²⁾ 및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³⁾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페트(PET)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활용지정사업자⁴⁾로 지정하여, 페트 생산 시 3%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하고 있음(참고 1: 재활용지정 사업자 제도 참조).

그러나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페트(PET) 생산자’가 아닌 페트를 제품용기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생산자’들에게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이하 “재생페트”라고 한다)의 사용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원재료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 경제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 다. (생략)
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3)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2조(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4) 이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지정사업자는 2개 기업임.

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⁵⁾

최종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최종생산자의 재생 페트 사용 유인이 적어 재생원료의 사용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참고로, 다음과 같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가치 체인(Value Chain)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를 표현한 그림이고, 현행법상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 주체는 ‘석유계 제품 생산’ 업체들이며 ‘플라스틱 제품 최종 생산자’에게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없음.

[플라스틱 재생원료 Value Chain]



5)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별 종류가 다양하고, 혼합 재질로 제조되거나 각종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식품 등 이물질로 오염된 채로 배출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 세척, 분쇄 및 화학적 정제 등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재료 대비 재생원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위 그림에서 현행법상 재활용지정사업자는 페트(PET)를 1만톤 이상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원료' 생산자임
(플라스틱 제품 최종 생산자 옆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 표시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를 의미)
- ※※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PET)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플라스틱 제품 최종 생산자'의 사용 유인이 적음

자료 :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아닌 최종제품생산자에게 재생페트 사용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그 외 적용대상 재생원료 범위 및 의무사용 비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음.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 행	법률 개정 후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23조 - 재생원료 사용 <u>직접</u> 규정 없음	「자원재활용법(안)」 제33조의3 - 재생원료 사용 <u>직접</u> 규정
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 페트원료 생산자 : <u>최종제품 생산자</u> 의 재생원료 수요 미발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안)」 제37조의2 - 최종제품생산자 : <u>최종제품 생산자</u> 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재생원료 수요 촉진 ※ 환경부안
목표	페트원료 생산자 재생PET 3% 사용	최종제품 생산자 재생PET 30% 사용 (~'30년 목표)

자료 : 환경부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의무 부여 대상 재생원료의 범위가 넓어 개정안 전체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 제33조의3 조제목을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에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로 한정하는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음.

현 행	개정안	산업부안	환경부 조정안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자료 : 환경부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승인업무,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 설정 연구 등 예산으로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0억 6,200만원 이상(연평균 2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안 제33조의3 신설) -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 설정 연구	204	208	212	216	221	1,062	212

주: 법률 제19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재활용지정 사업자 제도

□ 개 요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정업종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이용목표를 부여**(’93년~)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적용 대상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한 업종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 ①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③ **(제철·제강업)**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④ **(합성수지제조업)** 페트원료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이용목표 및 실적 (2023년 기준) >

재활용가능자원		이용 목표	실 적
폐지 (68개소)	폐지(41개소)	90%	97.4%
	폐골판지(27개소)	110%	116.6%
폐유리용기 (14개소)	백색(4개소)	70%	68.7%
	녹색(4개소)	78%	149.8%
	갈색(6개소)	67%	90.4%
철스크랩 (19개소)	철스크랩(14개소)	50%	58.3%
	폐철캔(5개소)	130천톤	175천톤
폐플라스틱 (’23년 신규)	PET원료(2개소)	3%	0.4%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에서 이용목표 규정

□ 세부 운영절차

- 재활용 계획 수립(지정사업자) → 이용실적 제출(사업자단체 → 환경부) → 목표 미달성 시 명단 공개 등 조치(환경부)

자료 : 환경부

※ 참고자료 2: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제도 비교

구 분	EU	독일	영국	우리나라																																			
규 정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	신포장재법	플라스틱 포장세	자원재활용법																																			
대 상	EPR대상 제조, 수입, 유통	포장재 제품 제조, 수입, 소매	10톤 이상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수입	PET 연간 1만톤 이상 원료생산자																																			
품 목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 음료 용기	플라스틱 포장재	PET																																			
내 용	<table><tr><th>구 분</th><th>2030</th><th>2040</th></tr><tr><td>1회용 음료용기</td><td>30%</td><td>65%</td></tr><tr><td>PET접촉민 감성 포장재</td><td>30%</td><td>50%</td></tr><tr><td>기타 폴리머 접촉 민감성 포장재</td><td>10%</td><td>50%</td></tr><tr><td>기타 플라스틱 포장재</td><td>35%</td><td>65%</td></tr></table>	구 분	2030	2040	1회용 음료용기	30%	65%	PET접촉민 감성 포장재	30%	50%	기타 폴리머 접촉 민감성 포장재	10%	5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65%	<table><tr><th>구 분</th><th>2025</th></tr><tr><td>PET병</td><td>25%</td></tr></table> <table><tr><th>구 분</th><th>2030</th></tr><tr><td>1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td><td>30%</td></tr></table>	구 분	2025	PET병	25%	구 분	2030	1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	30%	<table><tr><th>구 분</th><th>2022</th></tr><tr><td>포장재</td><td>30%</td></tr></table>	구 분	2022	포장재	30%	<table><tr><th>구 분</th><th>2023</th></tr><tr><td>PET원료</td><td>3%</td></tr></table> <table><tr><th>구 분</th><th>2030</th></tr><tr><td>최종제품 생산자</td><td>30%</td></tr></table>	구 분	2023	PET원료	3%	구 분	2030	최종제품 생산자	30%
	구 분	2030	2040																																				
	1회용 음료용기	30%	65%																																				
	PET접촉민 감성 포장재	30%	50%																																				
	기타 폴리머 접촉 민감성 포장재	10%	5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65%																																					
구 분	2025																																						
PET병	25%																																						
구 분	2030																																						
1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	30%																																						
구 분	2022																																						
포장재	30%																																						
구 분	2023																																						
PET원료	3%																																						
구 분	2030																																						
최종제품 생산자	30%																																						

※ 참고자료 2: 재생원료 사용의무 운영 체계(법률 개정 전·후)

법 률		시행령		고 시	
현 행	개 정 후	현 행	개 정 후	현 행	개 정 후
재활용지정 사업자	재생원료 사용의무	재활용지정 사업자	재생원료 사용의무	재활용지정 사업자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23조	제33조의3	제32조, 제33조 * 개정 필요	제37조의2 * 신설 필요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지침	재생원료사용 의무 고시
* 개정無	* 안 신설	①종이제조 ②유리용기제조 ③제철·제강 ④PET원료생산	①PET병 최종 제품 생산 * 현행④ 삭제	* 재생원료 내용 삭제	* 고시 신설

자료 : 환경부